

보육교직원의 출산휴가·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입니다

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등을 거부하거나,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없습니다.

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육아휴직 등 사용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육아휴직 기간에도 '4대 보험료'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

국민연금

노사 협의로

- ①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고(국민연금공단)하거나
- ② 직전 납입하던 국민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가능

건강보험

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(국민건강보험공단)

고용·산재보험

'근로자 휴직 등 신고' 시 미부과(근로복지공단)

* 육아휴직 기간은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제19조 등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

어린이집 내 갑질과 괴롭힘은 폭력입니다

“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
부당한 업무지시나 폭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”

- ☑ 사용자(또는 근로자)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(근로기준법 제76조의2)
- ☑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
→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
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
